

회 칙

BLUEONE THE HONORS C.C

BLUEONE THE HONORS C.C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 클럽’ (이하 ‘클럽’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BLUEONE THE HONORS Country Club’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주식회사 블루원(이하 ‘회사’ 라 한다)이 소유, 경영하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 골프장의 회원자격, 권리, 의무 및 클럽이용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한다.

제3조 사무소

1. 클럽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불로 391(천군동)에 둔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클럽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칙의 성립 및 효력

이 회칙은 회사와 클럽회원(이하 ‘회원’ 이라 약칭한다)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회원가입계약(이하 ‘입회계약’ 이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여, 입회계약 종료 시까지 회사와 회원간의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평일회원
4. 기타회원

제6조 총회원수

1. 정회원

본 클럽의 모집인원은 650명 이내로 한다.

2. 평일회원

본 클럽의 모집인원은 30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별 정의

1. 정회원(지명인)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 개인 정회원과 법인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 정회원은 1구좌당 1명까지,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명까지 회사에 지명인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인정하여 반(1/2)구좌를 소유하는 법인 정회원은 1명의 지명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준회원

1) 가족회원(개인회원)

정회원이 신청한 자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인 정회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의 가족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회원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등록지정인

법인 정회원은 법인의 재직자 중 2명의 등록지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정회원이 반(1/2)구좌를 소유한 경우에는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3. 평일회원

평일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평일회원 모집조건과 모집방법에 따라 클럽회원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회원을 말한다. 법인 정회원은 1구좌당 2명까지 회사에 지명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정하여 반(1/2)구좌를 소유하는 법인 정회원은 1명의 지명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자격 및 회원 부여기간 등을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회원자격

1. 회원은 30세 이상의 사람이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0세미만인 사람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2. 개인정회원의 가족회원은 20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세미만인 사람의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3. 외국인, 외국법인도 내국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회원이 될 수 있다.
4. 파산자, 정신이상자, 전염성질환환자, 기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회원자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입회 및 입회금 반환

제9조 입회

1. 정회원과 평일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완납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단, 평일 회원의 경우 입회 기간은 2년간으로 하며 재계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취득한 후 준회원 카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입회기간은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당해 준회원의 지정을 신청한 정회원의 입회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정회원은 준회원을 입회기간 중에 회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준회원의 입회기간은 최초 준회원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준회원의 변경시 정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 평일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 다만, 회원권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제한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회원의 제명 또는 회원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여 클럽의 품위와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경우
2. 각종 요금을 3개월 이상 지체한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원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 또는 입회금에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4. 본 회칙 및 클럽의 제반규칙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5. 주소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인회원이 지명인 및 등록지정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탈회
3. 제명
4.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때
5. 회원인 개인 또는 법인의 파산
6. 법인의 해산,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제13조 탈회

정회원은 가입 후 회원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승계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그 자격을 승계한다.

1. 정회원, 평일회원이 사망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합병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권의 양도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상속,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입회 심의에 준하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수한 회원권의 법적 하자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수 및 상속취득시 입회기간은 최초회원의 잔여 입회기간으로 한다.
3.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4.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5. 회원권의 동반자 우대혜택(비즈니스, VIP, VVIP)은 양도, 양수시 소멸된다.
6.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클럽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클럽 정식 개장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타회원에 우선하여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2. 평일회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골프장 휴장일을 제외한 평일에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3. 준회원, 기타회원은 회사가 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본 골프장 이용약관 및 제반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클럽 및 다른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물을 이용시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원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회원은 회사에 등록된 신상에 관한 사실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1. 회원의 권익보호 및 클럽의 품위 유지, 원활한 운영,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대표하는 자치적 기구로서 ‘클럽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회원전원의 대표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가 클럽의 운영, 이용질서, 시설의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이를 클럽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규정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클럽운영위원회 규정을 작성하고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경기규칙

제21조 경기규칙

대한골프협회의 경기규칙을 클럽의 경기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임시규칙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로컬룰(Local Rule)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사가 행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제23조 회칙개정

1. 이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자격, 회원의 클럽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건전한 관습과 상례에 따른다.

제24조 부칙

1. 이 회칙은 2004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운영위원회 업무는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